

제 15 조 서비스의 중단

수돗물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EBMUD 에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한 날짜(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제외)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고객은 고객이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지정한 날짜까지는 자신의 건물에 제공된 모든 수돗물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EBMUD 는 수돗물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고객이 지키지 않은 경우에 수돗물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재분류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EBMUD 는 수돗물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에 그 동안의 연체 요금 이외에 현행 요금단가에 의한 서비스 복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수돗물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중단된 수돗물 서비스가 재개되도록 허용한 경우 EBMUD 는 언제든지 수돗물 서비스를 다시 중단할 수 있으며, 수돗물 서비스가 재개되기 전에 고객이 납부해야 할 사용 금액 및 각 해당 건에 대한 서비스 재개 비용을 추가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비가정용 수돗물 서비스의 경우, 수돗물 서비스 요금과 해당 사항이 있을 시 부과된 하수도 요금이 연체된 경우 또는 이전 주소에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 서비스는 고객의 납부가 납부일로부터 60 일 이상 연체될 때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EBMUD 는 요금체납에 의한 서비스 제한 15 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수돗물 이용 계정상의 고객 및 실제 사용자(고객의 주소가 서비스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추가로, EBMUD 는 요금체납에 의한 서비스 제한 48 시간 전까지 이용 계정상의 고객 또는 동거인(성인)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야 하며, 연락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한 최종 통지서와 본 규정 사본을 건물 구내에 남겨야 합니다.

가정용 수돗물 서비스의 요금 미납에 관한 사항은 제 15A 조를 확인하십시오.